

## Ⅱ. 소득세제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

### 1. 소득세제 개편 배경

#### ■ 증세없는 복지정책 기조유지

- 정부는 급속한 **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증가**하고, 저성장 등으로 복지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**복지재원 확충방안**을 모색함.<sup>4)</sup>
  - 복지지출 규모는 2011년 GDP 대비 9.1%(OECD 평균 21.7%)<sup>5)</sup>에 불과하나, 2050년 경에는 20%를 상회할 것임.<sup>6)</sup>
  -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,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1~2% 수준으로 하락할 것임.
- ‘증세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’는 대선 공약에 따라 세제 제도의 근본적 변경 대신 **부분적으로 개편**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함.

#### ■ 조세 부담의 형평성 지향

- **소득공제 방식**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증가하므로 **소득불평등을 야기**시킬 뿐만 아니라 **세수가 줄어들**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됨.
-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**세액공제 방식**으로 세제를 개편하여 **조세 부담의 형평성**을 제고하고 **복지재원을 마련**하고자 함.

4)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기금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논리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.

5) 진익 외(2014), 「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」.

6) 보건복지부(2013),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.

## ■ 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 대두

-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조세부담률<sup>7)</sup>이 낮고 소득세 비중도 낮으므로 소득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자는 논리가 대두됨.<sup>8)</sup>

※ 소득세: 우리나라 3.6%, OECD 평균 8.4%, 일반소비세: 우리나라 4.4%, OECD 평균 6.9%, 법인세: 우리나라 3.5%, OECD 평균 2.9%, 재산세: 우리나라 2.9%, OECD 평균 1.8%

- 특히 각종 비과세·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<sup>9)</sup>이 높아 과세기반이 약하므로 소득공제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함.

- 중위소득자의 총소득 중 소득공제 비율을 살펴보면, 우리나라는 43.4%로 OECD 평균 18.1%에 비해 25.3%p 높은 수준임.

## 2. 소득세제<sup>10)</sup> 개편의 주요 내용

### ■ 세액공제 방식의 강화: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혼합형

-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던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중 주요 항목이 세액공제<sup>11)</sup>로 전환됨.

- 인적공제인 자녀양육관련 소득공제(다자녀 추가, 6세 이하 자녀양육비, 출산·입양)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.<sup>12)</sup>

- 특별소득공제인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은 불입액의 15%를, 보장성 보험료, 연금저축, 퇴직연금은 불입액의 12%를 세액공제함.

7)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임.

8) 기획재정부(2013), 201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.

9) 근로자 면세자 비율(%): ('07)43.8 ('08)43.2 ('09)40.3 ('10)39.0 ('11)36.1.

10) 우리나라 소득세 산출과정은 <부록 1> 참조.

11) 2014년 소득세제 개편 전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세액공제가 일부 존재함.

12) 기타 인적공제(장애인, 경로우대자, 부녀자공제, 한부모공제)는 '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됨.

- 그 외에 소득공제로 허용되던 항목은 여전히 소득공제로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**혼합형태**임.
  - 근로소득공제, 기본공제,<sup>13)</sup> 추가공제 일부,<sup>14)</sup> 특별소득공제의 일부,<sup>15)</sup> 연금보험료,<sup>16)</sup> 보험료(건강보험 본인부담 등)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유지함.

#### ■ 근로소득 공제율 감소 및 최고 과표소득 구간 인하

-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공제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에 적용되던 **공제율<sup>17)</sup>**이 하락하여 **세 부담이 증가할** 유인이 발생함.
  - 총급여 500만 원 미만 구간은 80%에서 70%로, 총급여 500~1500만 원 미만 구간은 50%에서 40%로 공제율이 하락함.
- 또한 최고 과표소득 구간<sup>18)</sup>은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(3억 원→1.5억 원) 되어 1억 5천만 원 이상자의 **세 부담은 증가**함.

13) 1명당 연간 150만 원을 소득공제함.

14) 경로우대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에 대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유지됨.

15) 보험료, 주택자금, 기부금(이월분)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유지됨.

16) 공적연금의 본인부담분은 소득공제가 유지됨.

17) 근로소득공제는 <부록 2> 참조.

18) 과표소득 구간은 <부록 3> 참조.